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3. 16 선고 2019가단275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망 B의 소송수계인 C

변론 종결 2021. 2. 2

판결 선고 2021. 3. 16

주 문

1. 피고 C은 3/11지분에 관하여, 나머지 피고들은 각 2/11지분에 관하여 고창군 H대 1200㎡ 중
별지 감정도 표시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선내 (가) 부분 148㎡ 지상 본체, 별지 감정도 표시 25, 26, 27, 28, 29, 30, 25의 각 점을 차례로
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70㎡ 지상 창고, 별지 감정도 표시 31, 32, 33, 34, 31의 각 점을 차례로
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25㎡ 지상 창고, 별지 감정도 표시 35, 36, 37, 38, 39, 40, 35의 각 점을
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77㎡ 지상 창고, 별지 감정도 표시 41, 42, 43, 44, 41의 각 점을 차례로
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63㎡ 지상 본체, 별지 감정도 표시 45, 46, 47, 9,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선내 (바) 부분 1㎡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,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. 5. 11.부터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
2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는 고창군 H 대 120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(갑 제1호증)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(가)나마 부분 위에는 망 B(이하 '말뎁'이라 한다) 의 소유였던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이 존재한다.

원고는 망인과의 소송(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가단1652)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0. 5. 11.부터 2015. 5. 10.까지 연 차임 290,000원에 임대하는 것 으로조정이 성립되었다(갑 제4호증).

망인은 2020. 2. 12.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(갑 제5호증의 1, 2).

2. 건물철거 등 의무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, 피고 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 가 있고,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9. 5. 1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지 연 2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부당이 득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0다 2587판결 참조).

판사 허윤범

별지